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9,701,546	33,891,046
일반회계	928,914,911	27,867,447
특별회계	200,786,635	6,023,599
공기업특별회계	170,364,625	5,110,939
상수도사업	86,939,731	2,608,192
하수도사업	83,424,894	2,502,747
기타특별회계	30,422,010	912,660
주택사업 특별회계	3,520,629	105,619
교통사업 특별회계	20,771,810	623,1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13,074	42,39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009,799	90,294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9,622	289
대지보상 특별회계	553,139	16,594
기반시설 특별회계	270,087	8,103
수질개선 특별회계	873,850	26,21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770,71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